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30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근

7.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한동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희권

변론 종결2020. 10. 8.

판결 선고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I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16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I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I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I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I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I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I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가. I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I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2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가. I와 피고 H 사이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I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6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16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는 I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D은 I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4항과 같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E은 I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5항과 같다.

5. 피고 F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F는 I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6의 가., 나. 항, 예비적으로, I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는 원고에게 1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 G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2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6의 가., 다. 항, 예비적으로, 피고 F,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2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H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H은 I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6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7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I에 관한 채권 취득 경위

1) J의 I에 대한 채권 취득 가) J은 2017. 5. 4.자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I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합11호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I는 J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J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8. J의 항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J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 원고는 J을 상대로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904호, 2019차1220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채749호로, "J이 I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 정본에 의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부 및 종된 권리 중 청구금액 4억 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I의 2019. 8. 1.경의 재산 현황

1) I의 적극재산 가) I는 2019. 8. 1.경 충남 예산군 K, L, M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24채(건물

1동이 아닌 구분건물 1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9년 9~10월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N, O)에서 위 다세대주택 24채 중 일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세대주택 1채의 가액은 1억 2,4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평가되었다.

나) I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38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8. 'P는 I에게 2,52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다. P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524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15. 항소를 기각하되 I가 지급받을 액수를 항소심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24억 6,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 8. 1.경을 기준으로 보면, 위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다) I 혹은 I의 상속인들(I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사망하였다)은 현재까지 P로부터 위 나)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I의 소극재산 I는 2019. 8. 1.경 금전소비대차계약, 도급계약, 토지매매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에 기초하여 최소 70억 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I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 등

1) I는 2019년 8월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 C, D, E, F,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I	피고 B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9. 8. 29.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16070호
I	피고 C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19. 8. 2.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4호
I	피고 D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9. 8. 2.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5호
I	피고 E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19. 8. 2.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6호
I	피고 F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2019. 8. 1.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2. 접수 제14503호
I	피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2019. 9. 2.자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9. 2. 접수

I	피고 B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9. 8. 29.자 매매계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8. 30. 접수 제16070호
	H	부동산	매매계약	제16196호

2) 피고 F는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2813호로 '2019.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 13, 1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I가 2019년에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한편,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	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1.2	I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9. 8. 29.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C	2.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2.2	I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9. 8. 2.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D	3.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3.2	I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9. 8. 2.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E	4.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4.2	I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2019. 8. 2.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F	5.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5.2	I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2019. 8. 1.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원물반환) (순번 5.1	

B	1.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5.3	원고에 대한 18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 (순번 5.2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G	6.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통정허위표시 주장(주위적 청구)
6.2	I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2019. 8. 1.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원물반환)(순번 6.1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6.3	피고 F, G 사이에 체결된 2019. 11. 12.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원물반환)(순번 6.2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H	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통정허위표시(주위적 청구)
7.2	I와 피고 H 사이에 체결된 2019. 9. 2.자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3.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주장, 순번 1.1, 2.1, 3.1, 4.1, 5.1, 6.1, 7.1 청구 관련)에 관한 판단

원고는 I가 피고 B, C, D, E, F, H(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이 사건 수익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고, 피고 F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 G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에 제시한 정황사실¹⁾ 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자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을 향유할 의사 없이 I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순번 1.2, 2.2, 3.2, 4.2, 5.2, 6.2, 7.2 청구 관련)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I와 이 사건 수익자들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의 특정 I와 이 사건 수익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익자들이 등기원인일자인 2019년 8월경에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그보다 훨씬 전인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초순경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수익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2019년 8월경에는 이미 있었던 계약을 이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안에 돌아와 기초사실에 올라 제1 내지 10호증, 올라 제1 내지 7호증, 올라 제1 내지 3호증, 올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와 이 사건 수익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즉 이 사건 수익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원인일자인 2019년 8월경에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2019년 8월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이 사건 수익자들은 I와의 합의하에 2019년 8월경을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익자들은 2019년 8월경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도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 B, C, D, E, F는, 자신들이 I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2018년 6~9월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에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목적물의 지번·호수·면적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물 내역과는 차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I와 위 피고들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매도인이 'Q'로

되어 있거나, 매수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된 서류도 존재한다), 분양대금으로 적혀 있는 액수도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2018년 6~9월경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준공된 직후이자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2019년 8월경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 B, C, E, F는 I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앞서, I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I를 위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수단으로 I와 다세대주택 분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I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민법상 대물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대물변제는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등 참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위 피고들이 2018년 6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I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물변제·분양의 확정적인 효력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2019년 8월경에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2) 소결론: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 I가 2019년 8월경에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I가 위와 같이 적극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그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가 이 사건 수익자들과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수익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와 전득자인 피고 G 사이의 관계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수익자들은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은, I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I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의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원고가 전부명령을 통하여 J의 I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전받은 시점은 2019년 10월경이지만, 위 금전채권이 성립한 시점은 최초의 채권자인 J이 I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2017. 5. 4.경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I가 피고 H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9. 2.경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 취득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E, F, G는, 원고가 I등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J과의 합의하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3) 결국 원고에게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원고가 J을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1220호 지급명령이 J의 이의신청포기서 제출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원고가 J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채74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J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받은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J과의 소송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I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가 수익자와 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의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피고 B, C, E, F, H은 이 사안에서 스스로 'I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I가 건축주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회수하지 못한 돈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들은 I의 변제자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득자인 피고 G는 I와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F와 친족 관계에 있는 데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I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기권

판사박광선

판사유현식

별지

- 1) 원고가 제시한 대표적인 정황사실로는, I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재산명시기일(2019카명11969호)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재산목록에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한 점, 피고 B, C, D, E, F, H이 I에 대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이 있다.
- 2) 원고는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F에 대해서는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순번 5.3 청구 관련)를,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F, G 사이에 체결된 2019. 11. 12.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순번 6.3 청구 관련)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위 각 청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각 청구(순번 5.2 및 6.2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위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 3)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